체육행사 안전정보시스템 활용 설명회 추진계획

□ 추진목적

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통보 및 보완 요구절차 등 안전관리 제도 변화 및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 안내

○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체육행사 안전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및 활용방법 안내

□ 설명회 개요

○ **(운영기간)** ’26.11.19.(목) ~ 12.1.(화) 기간 중 총 6회

○ **(참석대상)**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체육단체 관계자 총 300명 내외

○ **(일정·장소)**

대상	회차	일자	장소
지자체	1회	11. 19.(목)	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회의실
	2회	11. 20.(금)	
	3회	11. 24.(화)	
체육단체	1회	11. 23.(월)	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회의실
	2회	11. 26.(목)	
	3회	12. 1.(화)	스포츠안전재단 3층 교육장

※ (파 크 텔)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8

※ (안전재단)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, 올림픽공원테니스경기장

○ **(주최/주관)** 문화체육관광부(스포츠산업과) / 스포츠안전재단

□ 세부 진행계획(안)

시간		구분	대상	주요내용	비고
13:00~14:00	(60’)	접 수	공통	참석자 접수	
14:00~14:05	(5’)	개 회	공통	개회	
14:05~14:30	(25’)	제도이해	지자체	제도 변화 및 지자체 역할, 재단 지원체계 안내	
			체육단체	제도 변화 및 개최자 의무, 재단 지원사업 활용	
14:30~15:20	(50’)	안전인식	공통	사고사례를 통한 안전관리 중요성과 실천	
15:20~15:30	(10’)	휴 식	공통	휴식	
15:30~16:20	(50’)	시스템 교육	지자체	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보완 요구 등 시스템 활용	
			체육단체	안전관리계획 등록·제출 및 보완 요구 대응	
16:20~16:40	(20’)	질의응답	공통	질의응답	
16:40~17:00	(20’)	종 료	공통	마무리 및 개별 상담	

□ 참석 신청방법

○ **(신청기간)** ’26.10.23.(금) ~ 11.13.(금)

※ 회차별 정원 미달 시 접수기간 연장 및 추가 모집 예정

○ **(신청방법)** 대상별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(희망회차 선택 등)

대상	상세대상	신청주소	QR코드
지자체	시·도 및 시·군·구 체육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	https://forms.gle/CLpEVseNpru81zxDA	
체육단체	지방체육회, 종목단체 등 체육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	https://forms.gle/JBrYwCwwCS9USMz57	

※ 회차별 선착순 접수, 신청내역 확인 후 참석 확정 여부 및 상세사항 별도 안내

□ 기타 안내

○ **(추가교육)** 신청 수요 및 접수 현황에 따라 추가 설명회 개설 검토

※ 추가 개설 시 일정 및 신청방법 별도 안내

○ **(방문교육)** 기관별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(’26. 12.~)

※ 요청기관의 교육장소 확보 및 참석자 모집(30명 이상) 협조 필요(재단 유선협의)

○ **(문 의 처)** 스포츠안전재단 전산시스템팀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마창근 팀장	02-2023-5571	mcgmcg@sports.or.kr
김민재 주임	02-2023-5572	masamimj@sports.or.kr
배정우 주임	02-2023-5573	wjddn0308@sports.or.kr

□ 〔참고〕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

< 법률 제22088호, 2026. 10. 20. 공포 / 2027. 4. 21. 시행>

- (안전관리 조치 강화, 제13조의2) 일정 규모 이상 **체육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·사전 통보 의무** 및 **관할 지자체의 보완 요구 절차** 마련
  - 필요시 경찰·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및 체육행사 안전협의회 구성·운영
  - 안전관리계획이 통보된 도로 사용 체육행사는 **안전협의회 구성·운영 의무화**
- (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, 제13조의4) 체육행사 안전교육·점검·자문 및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·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 **법정법인 설립근거 마련**
- (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, 제13조의5) 체육행사 안전정보의 종합적 수집·관리 및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·등록 요청을 위한 **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 마련**
- (과태료, 제55조) 안전관리계획 수립·통보, 안전교육·점검 등 법정 안전관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**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**